

진출가이드북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2019. 12.

제 목 차 례

제1장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개관	1
1. 국가개요	1
2. 국방조달시장 현황	2
1) 방위산업 시장	2
2) 국방조달 시장	6
3. 국방조달 운영체계	9
1) 근거 법령	9
2) 국방조달 운영조직	10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12
1) 입찰방식, 계약 및 낙찰 방법	12
2) 주요 입찰절차	12
3) 절충교역 제도	13
4) 주요 조달지원제도	13
제2장 보츠와나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16
1. 입찰 준비단계	16
2. 입찰 참여단계	19
3. 계약체결 및 협상단계	21
4. 사후관리	23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26

표 차례

<표 1-1> 보츠와나 국가개황	1
<표 1-2> 보츠와나 병력 현황 (2019)	2
<표 1-3> 보츠와나 육군 군사력 개요 (2019)	2
<표 1-4> 보츠와나 공군 군사력 개요 (2019)	3
<표 1-5> 보츠와나 해군 군사력 개요 (2019)	3
<표 1-6> 최근 10년간 보츠와나의 국가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7)	4
<표 1-7> 최근 10년간 보츠와나의 품목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5
<표 1-8> 보츠와나 국방분야 조달규모	6
<표 1-9> 보츠와나 국방예산 현황 (2016-2023년)	7
<표 1-10> 보츠와나 국방조달 입찰방식	9

그림 차례

<그림 1-1> 보츠와나 무기 수입 추세 (1950-2018)	4
<그림 1-2> 국가별 수입누적비율	5
<그림 1-3> 품목별 수입누적비율	5
<그림 1-4> 보츠와나 국방비 지출추이	7

제 1 장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개관

1. 국가개요
2. 국방조달시장 현황
3. 국방조달 운영체계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제1장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개관

1. 국가개요

<표 1-1> 보츠와나 국가개황

국명	보츠와나 (Republic of Botswana)	
면적	581,730km ² (한반도의 2.7배)	
기후	대륙성 기후(4계절) 카스피 해 연안은 지중해성,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	
수도	가보로네 (Gaborone, 약 23만명)	
인구	약 229만명 ('17, World Bank)	
독립	1966.9.30. 영국으로부터 독립	
민족	Tswana족(79%), Kalanga족(11%) 등	
언어	영어(공용어), 세츠와나어(통용어)	
종교	기독교(71%), 토착신앙(6%) 등	
정부형태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다수당 당수가 대통령직 승계	
의회구성	단원제, 63명 - 선거에 의해 57명 선출, 4명은 대통령이 지명, 당연직 2명(대통령, 검찰총장) - 15명으로 구성된 추장원(House of Chiefs) 의회 자문기구	
주요인사	대통령 : Mokgweetsi Masisi, 부통령 : Slumber Tsogwane, 외무장관 : Unity Dow	
주요정당	- 보츠와나민주당(Botswana Democratic Party, BDP) : 집권 여당 - 보츠와나의회당(Botswana Congress Party, BCP) 및 Umbrella for Democratic Change (UDC :2012.11 소수정당들에 의해 창설된 연립정당)	
GDP	GDP : 174.07억불('17, World Bank)	
1인당 GDP	7,596불('17,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2.4%('17, 보츠와나 은행)	
화폐단위	풀라 (Pula), (1\$=10.18P, '18 평균)	
주요자원	다이아몬드 등 광물기반	
보츠와나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약 114억불('17, 보츠와나 은행) - 수출 : 약 62억불(다이아몬드, 구리) - 수입 : 약 52억불(식료품,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 1,167.4만불('18, KITA) - 수출 : 1,102.7만불(인조섬유, 승용차 등) - 수입 : 64.7만불(공업용 다이아몬드)

자료 : 주궤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보츠와나 약황(2019.03)

2. 국방조달시장 현황

1) 방위산업 시장

(1) 군사력

- 보츠와나 방위군(BDF, Botswana Defence Force)은 육군과 공군으로 구성되며 내륙국이기 때문에 해군(Navy)이 없음
 - 육군은 단순한 보병 병력 위주에서 기계화 부대 편성을 추구하며 최근 장비 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갑대대 확장에 힘쓰고 있음
 - 공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고 유능한 방위군으로 여겨짐
- 해군은 존재하지 않으나 보츠와나 국경지대에 위치한 초브(Chobe)강과 오카반고(Okavango) 늪지대에서의 군부대 이동지원 및 밀렵꾼 위협방지를 위해 해병대(Marine)가 존재하며, 국경순찰 및 불법침입단속, 사고 및 재난 시 수색·구조 활동 수행

<표 1-2> 보츠와나 병력 현황 (2019)

구분	Total strength	Army	Air force	Navy
Active personnel	9,000	8,500	500	0
Reserves	-	-	-	-

자료 : IHS Jane's data - Armed forces (2019.07.)

<표 1-3> 보츠와나 육군 군사력 개요 (2019)

Strength : 8,500		
Primary combat units : 4개 보병대대, 1개 기갑대대, 2개 야포대대, 3개 공병중대, 3개 방공포대로 구성		
	Unit type	Unit size
	Infantry	Battalion
	Armoured	Battalion
	Field Artillery	Battalion
	Engineer	Company
	Air Defence	Battery
Armoured vehicles	Artillery	
2 SK 105 light tanks	5 155 mm Soltam gun-howitzers	
20 Scorpion light tanks	6 120 mm M43 mortars	
45 Piranha IIIC armoured personnel carriers	20 122 mm APRA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s	
15 LAV-150 armoured personnel carriers	Ground-based air defence systems	
50 ACMAT TPK 420 BL armoured personnel carriers	7 20 mm M167 anti-aircraft guns	
30 BTR-60PB armoured personnel carriers	37 mm Type M-1939/Type 55/-65/-74 anti-aircraft guns	
8 RAM V-2 IAI armoured personnel carriers	50 9K310 Igla 1 (SA 16 'Gimlet')	
6 Spartan armoured personnel carriers	6 Javelin	
60 Panhard Véhicule Blindé Léger armoured personnel carriers		

자료 : IHS Jane's data - Army (2019.07.)

<표 1-4> 보츠와나 공군 군사력 개요 (2019)

Strength : 500			
Fixed-wing		Rotary-wing	
8 CF-5A (F-5)		5 Bell 412SP	
2 CN235M-300		2 Bell 412EP	
2 C212-300		1 EC225LP(H225)	
3 C-130B Hercules		2 AS 350B	
2 BN2A-21 Defender		5 AS 350B3	
5 BN2B-20 Defender		1 AS 350BA	
Base : 3 (Mapharangwene, Francistown Airbase, Gaborone International Airport)			
Order of battle (전투서열)			
Unit	Base	Type	Role
Z3 Squadron	Francistown	O-2A	Communications/anti-poaching
Z7 Squadron	Mapharangwene	PC-7 MkII Turbo Trainer	Training
Z10 Squadron	Mapharangwene	C212	Transport
Z10 Squadron	Mapharangwene	CN235M	Transport
Z10 Squadron	Mapharangwene	Hercules	Transport
Z12 Squadron	Francistown	Defender	Transport
Z21 Squadron	Mapharangwene	Bell 412SP	Utility transport
Z23 Squadron	Mapharangwene	Ecureuil	Miscellaneous duties
Z28 Squadron	Mapharangwene	CF-5A	Air defence/attack
Z28 Squadron	Mapharangwene	CF-5D	Continuation training
VIP Flight	Gaborone IAP	Global Express	VIP/transport
VIP Flight	Gaborone IAP	King Air 200	VIP/transport
VIP Flight	Gaborone IAP	Dornier 328	VIP/transport
VIP Flight	Gaborone IAP	Bell 412EP	VIP/transport

자료 : IHS Jane's data - Air Force (2019.04.)

<표 1-5> 보츠와나 해병대(Marine) 군사력 개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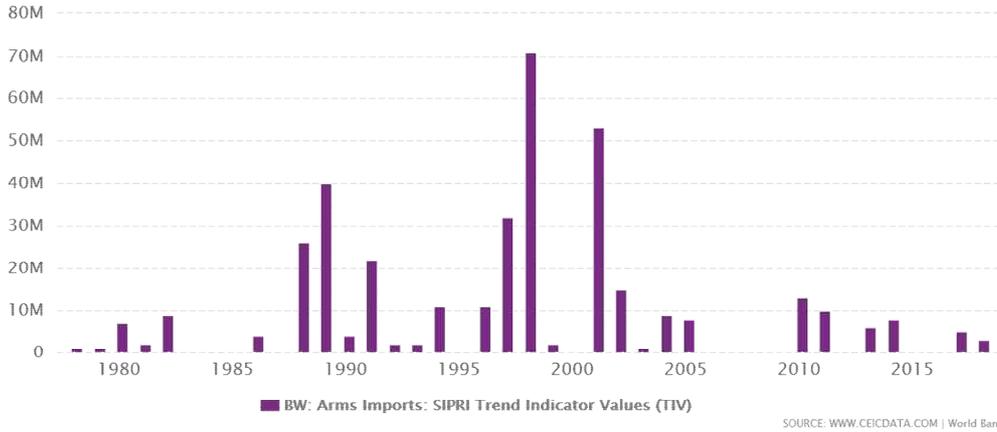
Strength : 0	
Surface fleet	
2 raider (Patrol craft)	
10 panther airboat (Multirole craft)	

자료 : IHS Jane's data - Navy (2019. 10.)

(2) 군수품 수입현황

<그림 1-0> 보츠와나 무기 수입 추세 (1980-2018)

(단위 : TIV million)



자료: TIV(trend-indicator value) of arms imports to Botswana 1978-2018

- 전체적으로 1987년, 1997년, 2000년 등 간헐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추이를 보임
 -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던 1997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공급 받았으며 2000년에는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프랑스로부터 항공기 및 장갑차를 수입하는 등 수입급증을 보인 시기마다 항공기 수입이 주요 요인임

<표 1-6> 최근 10년간 보츠와나의 국가별 수입 현황 (2008-2017)

(단위 : TIV million)

품목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적	비중(%)
Spain		8	8						3		19	42.22
Ukraine					6						6	13.33
France								2	3		5	11.11
Switzerland						5					5	11.11
United States		2	2								4	8.89
Canada						3					3	6.67
Norway		3									3	6.67
합계		13	10		6	8			5	3	45	100.00

<그림 1-2> 국가별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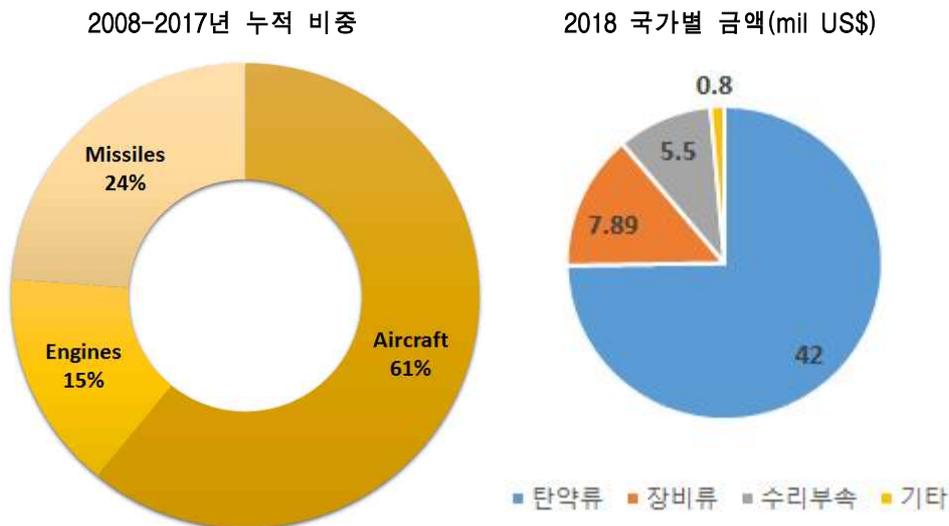


<표 1-7> 최근 10년간 보츠와나의 품목별 수입 현황 (2008-2017)

(단위 : TIV million)

품목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적	비중(%)
Aircraft		12	8			5			3		28	60.87
Engines		2	2			3					7	15.22
Missiles					6				2	3	11	23.91
합계		14	10		6	8			5	3	46	100.00

<그림 1-3> 품목별 수입 비중



자료: TIV(trend-indicator value) of arms imports to Botswana 1950-2017, SIPRI 및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05.19.) 재가공

- 지난 40년간(1977년~2017년)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와 미국이 4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영국, 스페인, 프랑스 순이었으나, 최근 10년(2008년~2017년)에는 스페인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프랑스, 스위스의 순임
 - 2000년대 초까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중심의 수입에서 2009년 이후 유럽 중심으로 변모되었는데, 이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등의 협정으로 인해 EU와의 교역이 활발해 지며 유럽국가로부터 고가인 항공기와 엔진, 미사일 등을 주로 수입한 것에 기인함
- 지난 40년간 수입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항공기(69%)이며 장갑차, 미사일, 엔진 및 화력, 센서, 대공시스템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최근 10년간 수입품목으로도 항공기가 61%로 가장 많고 미사일(24%), 엔진(15%) 등이 그 뒤를 따름
- 개관해보면, 보츠와나는 항공기 등 공군 중심의 장비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국방조달 시장

(1) PPADB에서 공표한 국방조달 규모

<표 1-8> 2016/17 보츠와나 국방분야 조달 규모

(단위 : B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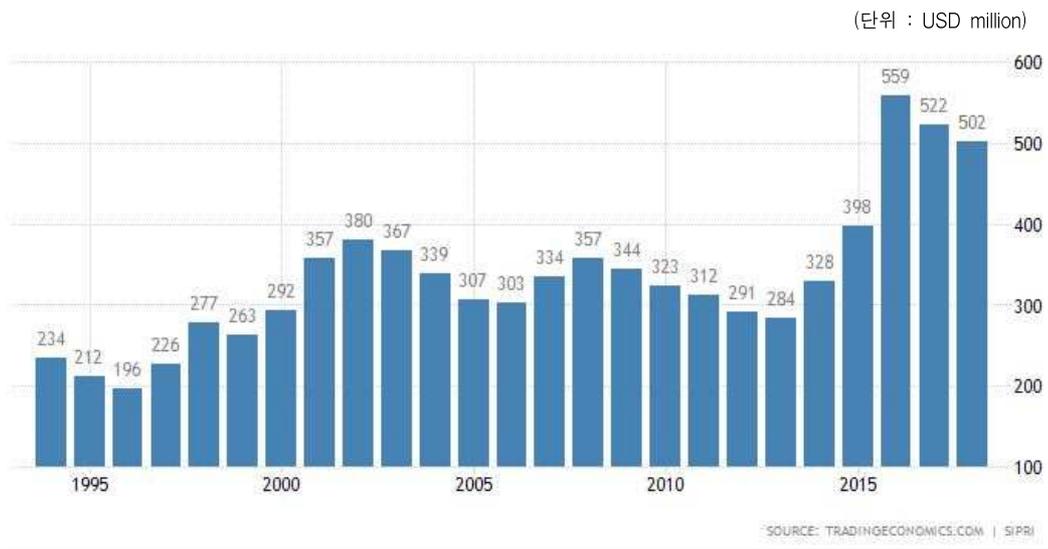
구분	2015/16			2016/17		
	전체 낙찰액	국방분야 낙찰액	비중(%)	전체 낙찰액	국방분야 낙찰액	비중(%)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이사회 (PPADB)	39억	1억	2.6	60억	-	-
정부부처 입찰위원회 (MTCs)	41억	7억	17.1	54억	10.4억	19.3
지방행정 입찰위원회 (DATCs)	5억	-	-	4억	-	-
특별조달 및 자산처분 위원회 (SPADC)	54억	54억	100	12억	12억	100
총 합	139억	62억	44.6	130억	22.4억	17.2

자료 : PPADB Annual Report 2015/16, 2016/17 재가공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이사회(PPADB) 연간보고서에서 밝힌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조달규모 대비 국방부 및 국방안보기관 조달규모 비중은 2016/17년도 17.2%임
 - 2016/17년도 정부부처 입찰위원회(MTCs)에서 집행한 조달 중 국방부 조달 규모는 10.4억 BWP (1,144억 원)이고, 국방부 등 국방 및 안보기관의 입찰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조달 및 자산처분 위원회(SPADC)의 조달규모는 약 12억 BWP (1,320억 원)로, 국방분야 조달규모는 총 22.4억 BWP (2,465억 원)임
 - 2015/16년도에는 PPADB의 조달 중 국방부 조달규모가 1억 BWP (110억 원), MTCs의 조달 중 국방부 조달규모가 7억 BWP (770억 원), SPADC의 조달 규모는 54억 BWP (5,942억 원)으로 국방분야 총 조달규모 44.6억 BWP (4,308억 원)이며 이는 총 조달규모 대비 약 45%에 해당

(2) 국방부 예산지출에 따른 국방조달규모 추정

<그림 1-5> 보츠와나 국방비 지출 추이 (1994-2018)



<표 1-9> 보츠와나 국방예산 현황 (2016-2023년)

Total Defence Budget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onstant 2019 USD billion	0.645	0.526	0.540	0.555	0.573	0.589	0.605	0.614
Constant 2019 local billion	6.779	5.526	5.680	5.831	6.021	6.195	6.360	6.459
Total Regular Forces	9,000	9,000	9,000	9,000	9,200	9,300	9,500	9,500
Budget per manpower (Constant 2019 USD)	71,621	58,392	60,012	61,615	62,235	63,342	63,664	64,653
% GDP	3.60%	2.87%	2.82%	2.77%	2.74%	2.71%	2.67%	2.61%

자료 : Jane's Defense Budget Overview, - Southern Africa, Botswana, 2019.03.14

- 국방비 지출규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위협요소 감소와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GDP기준 3.1%에서 2.0%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대공방어시스템 신규 도입 등의 사유로 2014년부터 급상승하여 2016년에는 GDP기준 3.6%까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2017기간 중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매년 8~9%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방비 지출은 보츠와나 접경국과의 안보 우려로 인해 1990년대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국방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1990년대 뛰어난 숙련도를 지닌 나미비아군과의 동등수준유지를 위해 고정익 항공기 등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방위군 규모가 크지만 부패문제가 심각한 짐바브웨 군대보다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 교육 실시
 - 2008년 이후 군 거주시설 제공

<표 1-8> 지출분야별 예산규모 (2017-2024)

(단위 : USD million)

Title	'17	'18	'19	'20	'21	'22	'23	'24
Procurement	0.127	0.126	0.128	0.136	0.138	0.143	0.151	0.158
RDT&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Military Personnel	0.251	0.262	0.263	0.266	0.257	0.267	0.281	0.295
O&M	0.110	0.113	0.119	0.123	0.121	0.125	0.132	0.138
Other	0.036	0.037	0.037	0.038	0.038	0.039	0.041	0.043

자료 : Jane's Botswana Defense Budget 2019.07

- 국방부 예산 중 획득예산은 2017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3. 국방조달 운영체제

1) 근거 법령

- 보츠와나의 공공 조달은 2001년 제정되어 2006년 개정된 공공조달 및 자산 처분법 (PPADAct)과 2006년 제정되어 2016년 개정된 동법 규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Regulation, PPADRegulation)에 의해 시행되며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군사 또는 국가 안보 조달 또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법과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음.

<표 1-10>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PADAct) 세부사항

PART	상세내용
1	서두 (제1조-제2조)
2	개관 및 범위 (제3조-제9조)
3	이사회 설립 (제10조-제17조)
4	이사회의 및 회람 (제18조-제25조)
5	이사회 기능 및 권한 (제26조-제57조)
6	재정 및 행정규정 (제58조-제60조)
7	DPPAD(Devolution of 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운영 (제61조-제65조)
8	특별우대제도 (제66조-제76조)
9	감사 및 윤리 (제77조-제94조)
10	ICRC(Independent Complaints Review Committee) 설립 (제95조-109조)
11	자문위원회 (제110조-115조)
12	계약자등록 (제116조-127조)
13	일반조항 (제128조-132조)

자료 : 보츠와나 법령검색 포털 www.elaw.gov.bw (Latest version : 2006. 발효)

<표 1-11>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규정(PPADRegulation) 세부사항

PART	상세내용
1	서두 (제1조-제4조)
2	조달기관 (제5조-제19조)
3	공공조달 규정 및 과정 (제20조-제39조)
4	평가과정 (제40조-제53조)
5	조달방법선택 (제54조-제61조)
6	물품조달 (제62조-제68조)
7	건설조달 (제69조-제72조)
8	서비스조달 (제73조-제76조)
9	관리검토 (제77조-제79조)
10	일반조항 (제80조-제97조)
11	자산처분 (제98조-제122조)
12	공공자산처분방법 (제123조-제137조)

자료 : 보츠와나 법령검색 포털 www.elaw.gov.bw (Latest version : 2016.02. 발효)

2) 국방조달 운영조직

- 국방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입찰 프로세스의 초안 작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국방부(MDJS)에 있으나 실제 군용 물자 및 관련 물품의 조달을 위해 방위군(BDF)에 상당한 권한이 위임됨
- 국방부 내 총사령관 산하 군수사령관의 획득국장이 방산물자 소요예산 검토 및 대상사업 검토 및 선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프로젝트 검토 및 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인사임
 - 이 같은 결정이 있는 후에는 대통령 최종결정, 국회 예산승인을 거쳐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이사회(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Board, PPADB)라고 하는 조달기관에 의뢰하여 비공개 형태의 입찰이 진행됨
 - 국방조달 결정 관련 인사의 서열 : 대통령 > 국방부(장관) > 총사령관 > 부사령관 > 지원사령관 > 군수사령관 > 획득국장(실무자)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이사회(PPADB)는 법령 제42장 제8절(Act of Parliament Cap 42:08)에 해당되는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ct, PPAD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FED) 산하에 운영되는 공공조달 관리기관임
- PPADB 하에 설립된 특별조달 및 자산처분위원회(Special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Committee, SPADC)는 엄격한 기밀 유지와 관련된 건설,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PADAct) 제63조에 의해 설립됨
 - 위원회는 보츠와나 국방부, 정보보안 이사회, 부패 및 경제범죄 담당 부서, 형무소, 보츠와나 경찰청의 입찰을 심사
 - SPADC는 2 명의 정회원, 1 명의 비상근 위원, 공무원인 수석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사회 집행 위원장이 의장을 맡음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1) 입찰 기본원칙

- 입찰 기본원칙은 PPAD법에서 독립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PPADB의 의무로 확립되며, PPAD법 제26조에 따라 a)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경제 원칙을 고려할 것, b) 비용절감, 유지보수 용이성 및 기술적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할 것, c) 규모의 경제 이익을 위해 조달기록을 집계할 것, d)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e) 효율적이고 평등한 경쟁을 위해 모든 계약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할 것, f) 공공 조달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킬 것, g) 조달 과정에 대한 무결성, 공정성 및 대중 신뢰를 지킬 것으로 정의됨

2) 일반 조달제도

- 국방분야에서 활용되는 주요 입찰방식은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이며 그 외 견적 요청, 직접조달, EOI, 긴급조달은 일반적으로 <표2-13>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
 - 보츠와나에서 국방분야 입찰은 비공개 입찰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제한입찰의 경우 먼저 관심품목을 정하고 해당 업체의 shortlist를 작성한 후 그 중 지정된 관심업체들에게 품목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됨
 - 이 때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찰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 예: 한국의 8×8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정작 보츠와나 방위군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 결국 유럽의 뼈라나를 구입한 사례가 있음¹⁾

<표 1-12> 보츠와나 입찰제도별 입찰절차

구분	과정 개요
공개입찰 (Open Bidding)	조달계획항목 승인 → 입찰서류 준비 및 입찰 식별번호 등록 → 규격 및 조건 확정 → 정부 공보 및 광고 → 입찰 제출기간 지정 → 공개입찰 진행
제한입찰 (Restricted Bidding)	조달계획항목 승인 → 입찰서류 준비 및 입찰 식별번호 등록 → 규격 및 조건 확정 → 입찰 제출기간 지정 → 입찰 진행 → 입찰서 무결성 검사

1) 현지 에이전트 인터뷰를 근거로 함

견적요청 (Quotation Proposals Procurement)	견적요청서 작성 → 제출기간확정 → 입찰마감
직접조달 (Direct Procurement)	PPADB 서면 승인 → 규격 및 조건 확정 → 잠재계약자에게 공식 전달 → 입찰 공개 → 계약자 평가 → 평가위원회 결정
Eoi (Expression of Interest)	PPADB 서면 승인 → 규격 및 조건 확정 → 국내 및 국제 인쇄매체 홍보 → 입찰공개
긴급조달 (Emergency Procurement)	PPADB 서면 승인 → 규격 및 조건 확정 → 잠재계약자에게 공식 전달 → 입찰공개 → 계약자 평가 → 평가위원회 결정

3) 절충교역 제도2)

- 보츠와나는 절충교역 제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국방조달을 통해 얻으려는 점이 유지보수 및 지원활동, 교육제공에 국한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4) 주요 조달지원제도

- 주요 지원정책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희망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 하므로 지원제도가 존재할 뿐 실질적 효력은 없을 가능성이 큼
- PPAD법 제66조에 따라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는 ‘조달특혜제도’는 정부가 경제 및 사회적 목표에 따라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결정보류, 특혜조달, 자산처분계획을 임의로 도입할 수 있음을 명시
- PPAD법 제67조는 시민계약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국민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모든 시민계약자는 조달 및 처분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73조에 따라 시민계약자 중심의 낙찰선택호를 명시함
- PPAD법 제71조에 따른 ‘조달예약제도’는 a) 낮은 복잡성, b) 한정된 규모, c) 반복적, d) 재정적인 한도 존재, e) 시민계약자에게만 개방, f) 자격을 충족하는 계약자간의 경쟁에 해당하는 조달/처분활동일 경우 적용(조달우선권을 제공)

2) IHS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 - Botswana(2018.03.) p.16 내용 인용

제 2 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1. 입찰준비단계
2. 입찰참여단계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4. 사후관리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 보츠와나에서는 PPAD법과 PPAD규정이 모든 조달활동에 적용되며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방분야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됨
 - 이에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일반조달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방조달에 적용되는 공개입찰 및 제한입찰을 국제입찰 참가 입장에서 서술함

<참고> PPAD규정 제19조 보츠와나 방위군, 경찰청 등 조달절차

- (1) 보츠와나 방위군, 경찰청 등 기타 안보 기관 조달의 경우 공개입찰 및 제한입찰로 진행함
- (2) 조달기관이 제(1)항에서 언급된 제한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 (a)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b) 제한입찰을 통해 조달의 점진적 감소(progressive reduction in procurement)에 대해 동의하여야 함
 - (c) 제한입찰의 각 조달절차에 대해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 함
- (3) PPAD법 또는 이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츠와나 방위군, 경찰청 등 기타 안보 기관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입찰준비단계

(1) 기본원칙

- 국제공개입찰은 PPAD규정 제56조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 입찰자의 참여로 하여금 보츠와나 조달시장의 경쟁촉진, 가치창출, 조달요건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목표로 하고, 국내 입찰자 또한 국제공개입찰에 참가 가능
- 국제제한입찰은 PPAD규정 제57조에 따라 이사회에 사전 서면 권한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공급자가 조달가능할 경우, 비상사태로 공개입찰절차 진행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

(2) 벤더등록

- 입찰참가는 PPADB 벤더 등록 후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벤더 등록을 위해 업체 모든 이사의 여권사본, 업체증권증명서, 수수료 등을 제출하며 입찰별 참가에 따라 필요사항이 달라짐

<표 2-1> PPADB 벤더등록 필요사항

No.	필요사항														
1	National Identity Card number (Omang number for citizens), Copy of passport (non-citizens) for all shareholders and directors 외국 기업의 경우 업체 모든 이사의 여권사본														
2	Copies of share certificates by Company Secretary 주권증명서 사본														
3	Share transfer acknowledged by CIPA form* (where applicable) CIPA 형식에 따라 인정된 주식양도증 (해당되는 경우)														
4	Cancelled share certificates (where applicable) 취소된 주권 사본 (해당되는 경우)														
5	Copy of work permits and residence permits for non-citizen directors (where applicable) 비시민 관리자의 거주허가증과 노동허가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6	Prescribed Company Forms: 6.1 Names and Addresses of Directors and Secretaries 6.2 Return on allotment of shares/issue or reduction of shares 6.3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Registration 6.4 Certificate of Recording Change of Name (where applicable) 6.5 Notice of change of Directors or Secretary and particulars of Directors or Secretaries (where applicable) 6.6 Company's Registered office or Notice of change of Registered Office (where applicable) 지정된 회사양식: 6.1 이사 및 비서의 이름 및 주소 6.2 주식 배당금 반환 수수료 또는 주식 절감 6.3 회사 설립 또는 등록 인증서 6.4 명칭 변경 인증서 (해당되는 경우) 6.5 이사 및 비서의 변경사항 통지 (해당되는 경우) 6.6 회사 등록 사무소 또는 등록 사무소 변경 통지 (해당되는 경우)														
7	REGISTRATION CHARGES applicable to Suppliers, Consultants & Service Providers 공급업체, 컨설턴트 및 서비스 업체에 적용되는 등록 수수료														
	Submission (Applicable to ALL Categories) Normal application submission fee - BWP100.00 Express application submission fee - BWP5000.00														
	Certificate														
	<table border="1"> <thead> <tr> <th>Category</th> <th>New Registration Fee per Sub Code</th> <th>Re-registration/Upgrading Fee per Sub Code</th> </tr> </thead> <tbody> <tr> <td>100% Citizen</td> <td>BWP100.00</td> <td>BWP50.00</td> </tr> <tr> <td>Majority Citizen</td> <td>BWP200.00</td> <td>BWP100.00</td> </tr> <tr> <td>Minority Citizen</td> <td>BWP500.00</td> <td>BWP250.00</td> </tr> <tr> <td>100% Foreign</td> <td>BWP1000.00</td> <td>BWP500.00</td> </tr> </tbody> </table>	Category	New Registration Fee per Sub Code	Re-registration/Upgrading Fee per Sub Code	100% Citizen	BWP100.00	BWP50.00	Majority Citizen	BWP200.00	BWP100.00	Minority Citizen	BWP500.00	BWP250.00	100% Foreign	BWP1000.00
Category	New Registration Fee per Sub Code	Re-registration/Upgrading Fee per Sub Code													
100% Citizen	BWP100.00	BWP50.00													
Majority Citizen	BWP200.00	BWP100.00													
Minority Citizen	BWP500.00	BWP250.00													
100% Foreign	BWP1000.00	BWP500.00													

자료 : PPADB, Common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2018.04.01.)

<표 2-2> CIPA From of Annual Return for a Company Limited by Shares 서식

작성항목	필요사항
1	업체상세사항
2	주식 자본 및 투자 사항
3	이사회, 감사회 세부사항
4	기타사항
5	주주 목록
6	설립일 이후 이전된 주식 목록
7	최근 감사 재무제표 및 연간 보고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8	사기업 서명
9	공기업 서명

-표준서식-



 REPUBLIC OF BOTSWANA
 COMPANIES ACT
 CHAPTER 42:01

 FORM 318
 ANNUAL RETURN
 (FORM 318)
 (FORM 318)
 (FORM 318)

FORM OF ANNUAL RETURN FOR A
 COMPANY LIMITED BY SHARES
 (SECTION 217)
 TO BE COMPLETED LEGIBLY IN BLACK INK

1. Form of Annual Return of a Company Limited by Shares **업체상세사항**

Annual Return of Company number Company name
 Company Limited by shares
 made up to the date of the Annual Meeting.

Date of meeting or Resolution in lieu of meeting
 under section 107 (2) of the Act, being for the year

1. Physical and Postal Address of the registered office of the company

2. Physical and Postal Address of the company

3. Address at which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r members is kept (if not kept at registered office)

4. Address at which financial records are kept (if not kept at the registered office)

The company is-tick/cross the correct box [

(i) A public company

(ii) A non-exempt company

(iii) An exempt company

2. Summary of Share Capital and Debentures **주식 자본 및 투자 사항**

Share Capital

1)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2) Total amount paid up on shares: F

Total amount called but unpaid: F

Amount received on any shares forfeited: F

Stated Capital

3) Classes of Shares: Number: Class:

Ordinary: Preference:



 REPUBLIC OF BOTSWANA
 COMPANIES ACT
 CHAPTER 42:01

 FORM 318
 ANNUAL RETURN
 (FORM 318)
 (FORM 318)
 (FORM 318)

3. Particulars of Directors, Auditors and Secretaries **이사회, 감사회 세부사항**

Names and addresses of the Directors, Auditors, Secretaries and Share Transfer Secretaries on the
 day of

Directors

Surname and Name	Identity number(s)	Postal Address	Other Directorships

Auditors

Surname and Name	Postal Address

Secretary

Surname and Name	Postal Address

Share Transfer Secretary

Surname and Name	Postal Address

4. Other matters (to be stated on a separate page) **기타사항**

(1) If the company is a party to a listing agreement with a stock exchange, state the names and addresses of, and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i) the persons holding the 10 largest numbers of shares; or
 if there is more than one class of shares, the persons holding the 10 largest numbers of shares in each class.

(2) Subject to sub-paragraph (2), unless the following particulars are included in the balance sheet or in a note on or a statement annexed to the balance sheet, which is required to be filed with this annual return particulars of:-

(a) the names, countries of incorporation and nature of the business and subsidiaries of the company and of all corporations in which the company is entitled by itself or a nominee to exercise more than 25 per cent of the votes exercisable at a general meeting of



 REPUBLIC OF BOTSWANA
 COMPANIES ACT
 CHAPTER 42:01

 FORM 318
 ANNUAL RETURN
 (FORM 318)
 (FORM 318)
 (FORM 318)

(b) where the company is a subsidiary of another company or corporation, the name of the company or corporation registered by the directors as the ultimate holding company of the first-mentioned company and if it is known to them the country in which it is incorporated.

Not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paragraph need not be given if the Registrar is satisfied and for this purpose the Registrar shall have regard to whether the disclosure would be harmful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or of that of other companies and also where appropriate any benefit to the public in requiring this disclosure.

5. List of Shareholders

Shareholder (regional number if any)	Surname and Name	Identity number(s)	Postal Address	Number of Shares held

6. List of shares transferred since date of incorporation / last annual return

Name of transferor Shareholder	Name of transferee Shareholder	Number of shares transferred

7. Copy of las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nnual Report of the Company (where required to be filed in terms of section 209 of the Act)

Note: This return must include a copy, certified both by a Director and by the Secretary of the Company, as to a true cop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laid before the company in general meeting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summary returns, and, in addition a copy, certified as a true copy, of the report of the auditor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a copy of the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s where required to be filed in terms of Section 212.

최근 감사 재무제표 및 연간 보고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REPUBLIC OF BOTSWANA
 COMPANIES ACT
 CHAPTER 42:01

 FORM 318
 ANNUAL RETURN
 (FORM 318)
 (FORM 318)
 (FORM 318)

E. Certificates to be given by a Private Company **사기업 서명**

(1) We certify:-

(a) that the Company has not since the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the last Annual Return issued any information to the public to subscribe for any shares or debentures of the company;

(*) (Delete whichever is inappropriate)

(b) The number of shareholders or members of the company is

.....
 Director

.....
 Secretary

(2) Should the number of shareholders or members of the company exceed 25, the following certificate is required:-

We certify that the names of members of the company exceed 25 consists wholly of persons who are in the employment of the Company and/or of persons who, having been formerly in the employment of the Company, were while in such employment, and have continued after the termination of such employment to be, shareholders or members of the company.

.....
 Director

.....
 Secretary

(3) In case of a private company which has passed an unanimous resolution under Section 246 that no returns register need to be kept by the company, state the date of the resolution

We certify that no shareholder has, on the date of the annual return, given notice in writing to the company requiring it to keep an annual register.

.....
 Director

.....
 Secretary

8. Certificates to be given by a public Company **공기업 서명**

(i) the number of shareholders or members of the company is

.....
 Director

.....
 Secretary

자료 : Botswana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CIPA, http://www.cipa.co.bw/, 검색일 : 2018.08.02.)

(3) 입찰준비

- 국제공개입찰은 조달품목에 대한 연간조달 및 자산처분 계획에 포함여부 확인 후 승인 서명을 받고, 입찰서류 준비 및 입찰 식별번호 등록, 규격 및 조건 확정, 정부 공보 및 광고, 입찰 제출기간 지정, 입찰 진행의 과정을 따름
- 국제제한입찰은 국제공개입찰에서 정부 공보 및 광고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며 추가로 입찰서의 무결성 심사가 마지막에 추가됨

2. 입찰참여단계

(1)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PPADB의 입찰관리시스템(Integrated Procurement Management System, IPMS) 홈페이지(<https://ipms.ppadb.co.bw>)에서 확인 및 검색 가능함
- 국제공개입찰에서 발주기관은 조달물품 규격 및 수량, 품질 등을 명확히 한 후 전문가 또는 지정된 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를 개발 및 확정된 뒤 입찰초청서 (Invitation to Bid, ITT)를 발행하며, 날짜, 시간, 장소 및 형식을 지정하여 입찰시작
- 국제제한입찰에서 입찰제안서는 공개되지 않고 제한된 입찰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Short-listing 또는 EOI를 통해 진행됨
 - Short-listing을 통해 조달할 경우 모든 절차는 PPADB 혹은 위원회에게 승인 되어야 하며, 업체 정보는 PPADB 데이터베이스나 관련된 컨설턴트에게 수령 가능하고 업체는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연장 가능하며 허용되는 최소 기간은 PPAD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제공개입찰의 경우 최소 6주, 국내경쟁입찰의 경우 4주, 선정된 후보자를 기반으로 한 입찰의 경우 최소 2주임

(2) 입찰서류 제출

- PPAD규정 제30조에 따라 조달부서는 입찰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각 입찰과 관련한 표준 입찰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

- a) 필수항목, b) 기술 및 품질특성(규격서), c) 사용된 입찰절차에 따른 입찰평가 기준, e) 각 기준 별 할당 점수, f) 각 기준 별 평가측정기준
- o 기술 및 가격제안서는 별도의 봉인된 봉투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자의 입찰 세부사항, 이름 및 주소를 표기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

- o PPAD규정 제6.13절에 따라 평가 방식은 ITT에서 계약목적, 배경 및 특성, 제출방식 등과 함께 기술되며 입찰서류는 해당부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개별 보고서를 통해 각 기준 별 평가점수, 입찰자 순위, 각 입찰자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채택함
- o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시행하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어 제안서는 반환됨. 기술요건 충족 시 가격제안은 이사회 승인 후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기술 및 가격점수 및 가중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Shortlist를 통해 참가한 국제입찰자는 가격제안서 공개 전 최소 2주 (현지 입찰자의 경우 최소 1주) 내에 현지초청

<표 2-3> 입찰소요기간

입찰절차유형		소요기간
1	Open domestic(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publication period	Minimum 4 weeks
2	Open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publication period	Minimum 6 weeks
3	Selective Tendering- floating period	Minimum 2 weeks
4	Quotation proposal procurement (RFQ) - floating period	Minimum 2 weeks
	Direct procurement method- floating period	Minimum 2 weeks
5	Adjudication and award	Maximum 14 calendar days for normal tenders
		Maximum 30 calendar days for large & complex tenders (supplies & works)
6	Notification of adjudication decisions of the Board to Procuring Entities	Within 2 days of approval by the Board.
7	Publishing of adjudication decisions of the Board	2 working days following approval by the Board
8	Placement of Contract (including contract negotiations)	Maximum 8 weeks
9	ITT vetting	10 working days
10	Publication of vetted Tender notice	5 working days
11	Vetting of procurement procedures for Parastatals	60 calendar days
12	Evaluation of tenders	30 calendar days after collection/opening of bid
		Forty five (45) calendar days after collection/opening of bid for large complex tenders

자료 : PPADB, Customer Service Standards for PPADB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1) 계약체결

- 입찰평가 후 1순위 입찰자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낙찰제안서는 입찰평가 위원회에 전달되고, 제안서가 승인되면 MTC 및 MATC에 의해 서명되어 조달 부서로 전달. 조달 기관은 기관장에 의해 서명된 낙찰 통지서를 준비 하여 a) 평가점수, b) 책임, c) 규정, d) 계약수행능력, e) 계약수행자격 내용을 최종 낙찰자에게 통보

(2) 계약이행

- PPADB 입찰매뉴얼 12.1에 따르면 공개국제입찰에서는 계약이 개시되기 전 완료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신용장을 사전에 개설하는 경우, 사전조치가 지연되면 계약시작 기간 또한 연기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면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는 계약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납품 일정, 빈도, 수량을 상세히 기술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PPAD법 제46절에 의해 계약종료 후 입찰부서는 이사회에게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업체의 a) 계약물품품질, b) 배송당시 계약물품의 실제성능, c) 계약완료 시기 및 완성도, d) 문의응답시간, e) 서면보고, f) 진행사항통보, h) 문제사항 정보제공, h) 문제해결속도, I) 작업시간의 정확성, j) 계약관리팀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평가한 계약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PPAD법 제52절에 따라 이사회는 계약관리 및 성과검토를 전담하며, PPAD법 제94절에 따라 입찰부서, 물품, 담당자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한 문서는 5년간 보관 후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로 전달하여 추가로 2년 더 보관 하고 이 문서는 계약의무 이행여부 검토의 기반이 됨

*<표 2-4> 계약완료보고서(End of Activity Report) 서식

작성항목	필요사항
1	입찰담당부서 및 입찰계약 세부사항
2	입찰이행 세부사항
3	PPADB 확인 및 의견

-표준서식-

1. CONTRACT DETAILS: 계약세부사항			
Ministry	Department	Contract Title	
부처명	부서명	계약명	
Contract Tender Number	Activity Type ⁱ	Contract Type ⁱⁱ	
입찰번호	입찰종류	계약종류	
Contractor ⁱⁱⁱ	Contract Award Date	Additional or supplementary Awards ^{iv}	
계약자	낙찰일	추가낙찰건	
Contract Original Description ^v			
계약최초사항			
Contract Final Description ^{vi}			
계약최종사항			
Purchase or Work Order Number ^{vii}	Purchase or Work Order Date ^{viii}	Estimated Contract Cost or Revenue	Original Contract Award Amount ^{ix}
구매번호	구매일자	계약규모	최초낙찰규모
Final Contract Amount	Contract Begin Date	Expected Contract End Date	Contract End Date
최종낙찰규모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예상일	계약종료일
2. PERFORMANCE DETAILS 계약실행세부사항			
Performance Indicators ^x	Performance Achievement ^{xi}	Sources of Variation ^{xii}	
계약실행담당자	계약실행업적	변동사항	
Performance Record ^{xiii}	Corrective Measures Taken ^{xiv}	Further Action Recommendation ^{xv}	
계약실행기록	시정사항	추가적업요청사항	
Other Comments			
기타사항			
Signature	Name	Designation	
서명	이름	지명	
Date	서명일자		
3. PPADB OFFICIAL USE ONLY PPADB전용작성란			
PPADB Report Analysis		Further Action	
PPADB Decision			

자료 : PPADB (2014), Operations Manual - Standard operating policies and procedures for public Procurement

4. 사후관리

- PPAD법 제53조 및 제103조에 의해 물품, 건설, 서비스에 대해 하나 이상의 계약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이의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항소가능하며 불만사항은 해당 기관에 제기될 수 있음
 - 입찰 및 계약관리에 대한 불만, 입찰기관 및 작업 진행자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 등이 해당되나 PPAD규정 제77조에서 조달방법, 평가절차, 위원회의 입찰거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음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회사명, 회사주소, 담당자명,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하여 a) 문제의 성격, b) 입찰정보, 위반내용진술, 관련 날짜 및 시간, c) 위반한 PPAD법 또는 규정, d) 증거, f) 대리인, g) 요청하는 조치사항을 서술하여 공식적으로 계약부서에게 전달
 - 불만사항 접수 즉시 PPAD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계약이행 보류되며 이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의제기 후 PPADB는 조사팀을 파견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PPAD법, PPAD규정, PPAD매뉴얼 혹은 기타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달절차취소, 조달계약취소의 조치를 취함
- PPAD매뉴얼 12.6에 따르면 물품, 건설, 서비스의 결함이 발견되고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입찰부서는 서면으로 즉시 구매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구매 부서는 수령 즉시 계약자에게 결함발견사실 및 문제의 정도를 전달하여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함
 - 물품, 건설, 서비스의 결함이 재산, 인력 혹은 시설 파손과 연관이 있는 경우 조달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입찰참여

Q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 시 장애요인 및 시행착오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 무기체계의 경우 현지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는 등의 현지운용여건 확인이 힘들고 특히 보츠와나 대통령, 국회, 국방부, PPADB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이해관계를 전제하여야 조달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등 사전적 협력이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 전력지원체계 진출의 장애요인 및 시행착오 주요 요소로는 유럽규격의 요구 및 한국 시험인증에 대한 불인정 등이 존재합니다.
- 그 외, 보츠와나 입찰 시 자국민 우대정책이 존재하므로 해당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참여가능한 유망품목은 무엇인가요?

- 보츠와나는 제조·생산활동이 불가하고 유지·보수 및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방위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어 중기적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세워 방산물자를 해외로부터 조달함으로써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산 장비조달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한국산 **전차나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조달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주로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등 중심으로 수입되어 왔으며 최근 제11차 국가개발 계획에서는 전투기, 군용차량, 대공시스템 등에 대한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보츠와나 방산품목의 각 품목별 수명연한을 비교분석하여 도태시기에 가까워진 방산 품목을 획득소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과 우리나라의 **對보츠와나** 수출 품목 및 수출가능 후보 품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추가로 보츠와나 조달계획 품목을 고려하여 도출된 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무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득소요 예측) 전차, 전투기, 수송기, 헬리콥터, 대공감시레이더, 경비용 보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품목) 전차, 전투기
전략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츠와나 조달계획 품목) 군용 피복(유니폼), 보호복 및 장비, 유니폼, 보안 장비(CCTV, 접근통제시스템 등 포함), 전자제품, 기계 및 기계 부품, 발전기 및 발전기 부품, 차량 및 차량 부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소방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품목) 군복, 군용품, 기계류, 차량류

□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전략

Q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하나요?

◎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입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츠와나는 직접 관리하는 무관 및 관련기관이 없어 주변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대사관의 무관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현지 에이전트의 정보 수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Q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보츠와나 국방부에 입찰참여를 할 경우**, 아래 진출 준비사항 Check-lis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사항
입찰정보수집	현지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가?
	진출국의 조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해당 전략을 세웠는가?
전략물품선정	보츠와나 연간조달계획에 해당 품목이 존재하는가?
	보츠와나 방위군 중 해당 제품에 대한 명확한 사용의사를 확인하였는가?
국제적 품질인증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의 품질인증을 획득했는가?
	완제품 판매 시, 시험평가팀의 현지 방문 완제품 시험검사를 대비한 준비를 하였는가?
계약이행자 관리	계약이행자인 직원들의 채용 및 업무범위를 기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기타 고려사항	보츠와나 수출을 위한 허가 등록을 받았는가?
	개발예산에 반영되기 위해 국방부 획득국장 접촉을 통한 제품홍보를 진행하였는가?
	군수공장 수립 등 합작형태로 진출을 고려할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투자정보를 확보하였는가?
	조달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신뢰성 있는 현지 기업과 교섭하여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체결 시, 이익분배 및 로열티,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된 철저한 준비를 하였는가?

Q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있나요?

● 보츠와나 진출 시도 및 성공사례와 그에 대한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출기업	진출형태	조달품목	성공요인	장애요인/시행착오
○○○○	현지 에이전트 통한 진출 시도	침낭, 군화, 배낭, 벨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가 자체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가격단가를 매우 낮추어야 함 · 영어/프랑스어로 된 제품규격 설명서 요구 · 유럽규격 등을 요구 · 한국에서 시험검사를 했음에도 현지에서 재시험 검사요구
○○○	현지 에이전트 통한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대응 (현지운용여건 확인 등) · 소요발생시 적절한 시절 단 방문, 보츠와나 국방부와 한국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운용여건과 환경에 맞는 현지화가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현지 에이전트 통한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발생시 적절한 시절 단 방문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입수 · 보츠와나 공군에 직접 접촉하여 대응하여 적극적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변수 존재 ·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 국회, PPADB 등 조달과정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의 수궁 필요

□ 보츠와나 진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활용

Q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 단기적으로 현지 에이전트 개발을 통한 진출을 모색할 경우, 다음의 **진출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입찰준비단계				
1 시장정보 수집	방산수출지원시스템(D4B)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수출지원시스템(D4B)을 통한 해외 입찰정보 및 방산시장 동향 정보 수집 진출매뉴얼이나 시장동향 자료 수집 	Jane's 등 방산 정보 서비스와 함께 D4B 활용, KOTRA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유용한 시장정보 수집	
	해외시장조사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무역관(방산교역지원센터)을 통해 해외잠재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2 전문인력 및 교육 등을 통해 전담화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Contact KOREA 포털 내 DB 구축, 기업 대상 글로벌 인재 정보 제공 이력검증, 면접주선, 채용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 특정활동 비자취득 및 출입국 특혜부여 골드카드 발급 	전문인력 구성을 통해 방산 특화된 시장조사에 활용, 향후 입찰참여 전담인력 확보와 연계	
	신규 수출기업화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기업이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퇴직전문 무역인력(수출전문위원)의 1:1 밀착 지원 		전담인력의 지역 및 품목 특성, 시장에 대한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 등 교육 		
3 사전 마케팅 활동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국제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 참가지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경비 일부 지원 	국제 방산 전시회에 적극 동참하며, 방진회 등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 국내외에서 현지 협력업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	
	산업별 특화사업 (방산물자)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물자 관련 마케팅 및 수주지원 		
	수출상담회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의 상담매칭 기회 제공 		
	해외시장조사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잠재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120개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등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필요한 제반 활동 지원 		
	무역사절단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B2B 온라인 마케팅 (KOTRA) <일반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B2B e-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아를 통한 상품 홍보, 해외 인콰리러리 수선, EMS국제배송 등 거래프로세스 전반 지원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해외전시회 (KOTRA)	· 해외전시회 한국관 구성 및 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등	
	해외시장개척 진출 선도기업 육성 (무역협회)	· 상품정보 온라인 홍보, 미니사이트 제작, 빅데이터 상시 거래 알선, 바이어 DB 타겟 마케팅, 해외 비즈니스 매칭, 전문무역상사 활용 매칭 등	
	K+ 인증제도 (무역협회) <일반물자>	· 한국산 프리미엄 상품 인증(K+) 부여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 (온라인 B2B 마케팅, 무역아카데미 지원 등)	
	무역촉진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 유망, 전략, 전문업종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참가 진행	
	해외수출 마케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자체 예산 활용한 지방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시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바이어 구매알선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에 대한 국내기업 알선 및 방한 바이어 현장방문시 통역, 무역상담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설치,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등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물자>	· 글로벌 쇼핑몰 입점지원, 눈 활용 마케팅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수출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물자>	· B2B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 입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최적화 등 해외 마케팅 지원	
	GMD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과정을 GMD를 통해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 선발 (조달청) <일반물자>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벤더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온라인 홍보 등		
4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인증 획득	수출 초보 R&D (KOTRA)	· 수출액 100만 US달러 미만의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분야 R&D를 발굴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육성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투자를 지속화하며, 제품 우수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인증을 습득
	수출 유망 R&D (KOTRA)	·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분야 R&D를 발굴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DQ 마크 인증제도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분야 우수제품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 확대	
	해외인증 정보제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취급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취득 지원	
* 수출 관련 종합적 지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원), 마케팅(KOTRA), 교육 및 컨설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	수출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인 경우, 상기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참여
	월드챔프 (KOTRA)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 시장정보 안내 등 5:5 매칭 펀드 지원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지원센터)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 발굴,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 지원	
입찰참여단계				
1	입찰정보 획득	* 상기 시장정보 수집, 사전 마케팅 활동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과정을 통해 획득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여 그를 통해 입찰정보 획득
2	벤처등록 및 입찰참여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 선발 (조달청)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벤더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온라인 홍보 등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입찰참여를 준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벤더등록을 추진함) ODA 사업형태로 진행될 경우, KOICA 등을 통해 입찰참여 국가기간 협력으로 G2G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KOTRA 등을 통해 입찰참여
		대외협력기금(EDCF) 활용지원 (한국수출입은행)	· 개도국 정부발주 수주사업 차관조건 개선, 민간 협력 차관 및 섹터개발 차관 신설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해외진출 지원 (KOICA)	· ODA 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기술로 감면 및 면제제도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기술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로 감면 및 면제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중소기업 절충교역 참여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가치평가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해 1.5 배~2배까지 최장가치 인정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G2G) 지원	· 국내외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정부간 거래 (G2G) 계약체결부터 이행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3	지적재산권 보호 조사	해외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활용 지원	· 6개국 (중국, 미국, 독일, 태국, 베트남, 일본)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상표/디자인 출원 등 비용지원, 최신 IP 동향 자료 제공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술보호를 위해 제안서 작성시 해당사항을 기재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계약 및 협상 단계				
1	수출 허가	방산수출 허가제도 (방위사업청)	· 해외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방산품목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산수출 허가를 받음
2	수출 보험 획득	환변동 보험료 지원	· 수출거래 환리스크 관리, 보험료 일정금액 지원	낙찰이 성립되면, 수출보험을 통해 손실위험을 예방함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커버를 위한 단기수출 보험	· 결제기간 2년내 수출 후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 적기 회수를 못할 경우 손실 보상 신용보험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제도	·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등에 대해 보증료 일부 지원	
3	계약이행 및 납품	방산수출 후속군지원 제도	·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 유지를 위해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 (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계약체결 이후 후속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수출대금 지원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맺은 대기업의 추천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자금 대출, 수출팩토링, 전대금용	수출에 발생하는 대금에 대해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함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자금 지원	· 수출성장/촉진자금, 수입자금, 해외투자/사업자금 지원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고용 창출 우수기업, 상생금융 프로그램 기업 등의 금리우대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정책조정률/고객조정률 우대금리 ·상생자금 대출, 상생협력 대출, 해외온렌딩		
	수출 관련 자금 대출	·선적전 보증공사의 수출보증보험서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대출 (IBK 수출준비자금 대출) ·수출강소 기업육성, 관세청 AFO 공인 획득기업 등을 위한 자금 대출 (수출기업 육성자금 대출)		
	동반성장 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 미래선도분야 벤처기업 금리우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금리감면, 설비투자펀드 우대		
사후관리단계				
1	모니터링	방산수출 후속군지원 제도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 유지를 위해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 (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계약체결 이후 후속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분쟁해결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설치 국가 중 분쟁수요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침해조사 등 소요비용 지원 (초동 대응) ·분쟁대응 전문가관을 활용하여 수출전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전략 컨설팅(분쟁대응)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모색함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록> 보츠와나 방위산업 유관기관 리스트

□ 보츠와나(Botswana)

■ 정부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Ministry of Defence, Justice and Security	Private Bag , Gaborone, Botswana	T: (+267) 369 8200/300 F: (+267) 393 3034	www.gov.bw/en/Ministries--Authorities/Ministries/Ministry-Of-Defence-Ju-Justice-and-Security1/
Botswana Defence Force	Sir Seretse Khama Barracks, Private Bag X, Gaborone, Botswana	T: (+267) 366 2100 F: (+267) 397 3600	www.gov.bw/en/Ministries--Authorities/Ministries/State-President/Botswana-Defence-Force-BDF
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Board	Plot 8913 Maakgadigau Way, Gaborone West Industrial , Gaborone, Botswana	T: (+267) 360 2000 F: (+267) 390 6822 E-mail : proffice@ppadb.co.bw	www.ppadb.co.bw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P O Box 102, Plot 181Kgale View, Gaborone, Botswana	T: (+267) 367 3700 F: (+267) 318 8130	www.cipa.co.bw

■ 한국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KOTRA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관 (보츠와나 겸임)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nr. Rivonia Road & 5th Street, Santon, South Africa	T : (+27)-11-784-2940 F : (+27)-11-784-2983	http://www.kotra.or.kr/KBC/africa/KTMIIUI010M.html
駐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보츠와나 겸임)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 0181, South Africa	T : +(27)-012-460-2508 F : +(27)-012-460-1158 E-mail : embsa@mofa.go.kr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방산물자교역 지원센터 (KODITS)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KOTRA 2층	T : +82-2-3460-7303 F : 82-2-3460-7907	http://kodits.kotra.or.kr/home/homeIndex.do

■ 현지 에이전트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웹사이트
개인 에이전트	김채수	M : (+267)-71-300-496 E-mail : cskim@gajoginv.com	-